

고용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와 건설현장 폭염 대책 총력 대응 선언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
- '폭염중대경보(38°C 이상)' 도입 시 옥외작업 중지 적극 활용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29일(금) 14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2일 및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연이어 강조함에 따라, 여름철 폭염기에 가장 취약한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대형 건설사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삼성물산(주), (주)대우건설, GS건설(주) 등 주요 건설사가 폭염 대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조치사항과 하절기 안전관리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사례]

- ☞ (사례 1) 하절기 공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영하여 체감온도 35°C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중지, 38°C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방안을 공정에 반영하여 이행
- ☞ (사례 2) AI 번역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외국인 노동자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작업중지 정보 등 실시간 모국어 안전정보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건강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 실시
- ☞ (사례 3) 외부 노출이 많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2개 팀 교대운영(1개팀 작업, 1개팀 휴식)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추진, 폭염 취약시간대 작업 최소화를 위해 조기출근 작업 시행 등 작업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14:00 이전 작업종료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 대책반」을 가동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세분화된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또한, 지난해 법제화('25.7.17.)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① 시원한 물, ② 냉방장치, ③ 휴식, ④ 보냉장구 지급, ⑤ 119 신고)의 현장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온열질환(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공기 압박에서 벗어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기 연장 등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라며, “최근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재해 발생 시 따르는 손해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안전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확고한 일념으로 국민들께서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안전한 일터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주요 20대 건설사 시공현장부터 온열질환 사망사고와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대표이사님들이 직접 챙겨달라”라고 당부했다.

- 붙임 1. 폭염 대비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
 3.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수칙」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과 장	신백우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현건 (044-202-8891) 한진우 (044-202-8895)
	안전보건감독국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담당자	서기관	유종호 (044-202-8936)

붙임 1

폭염 대비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26. 5. 29.(금) 14:00 ~ 15:30
- (장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B102호

□ 참석자

- (노동부) 장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안전보건감독국장 등
- (건설사)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

❖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호반건설, 디엘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제일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KCC건설('25년 시공순위 順)

□ 주요 내용

-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및 재해예방 안전투자 당부
 -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 실천방안 발표* 및 논의
- *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 세부 일정

* 전체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 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4:05~14:10	5' · 모두 말씀	장 관
14:10~14:30	20' · 건설사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실천방안 발표	3개사
14:30~14:35	5' · 폭염 대책 및 안전관리 당부사항 안내	실 장
14:35~15:25	50' · 건설사별 산업안전 실천방안 논의	참석자 전원
15:25~15:30	5' · 마무리 말씀	장 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5월 중순에 일부 지역의 최고온도가 34℃를 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폭염에 따른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을 강조하시는 만큼,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와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기업”으로서
 이번 간담회에서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소중한 대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1분기 사망사고자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업 전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고,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대표님들의 안전 철학과 의지,
 현장 노동자들의 실천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사고,
 수서역 인근 공사현장 매몰사고 등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결코 우리의 숙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일터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름철 폭염과 같은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에서 올해 6월부터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는 등
이제 폭염은 단순한 일상적 더위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 재난이자
유해·위험요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냉방장치·휴식(2시간마다 20분 휴식)·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를 법제화('25.7.17)하였습니다.

올해에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면서
폭염 예방 및 신속 대응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옥외활동이 잦아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취약 업종입니다.
이에 다음 네 가지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철저한 준수입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항상 준수해 주시고,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폭염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시
발주자에게 별도의 지체상금 없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현장의 밀폐공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맨홀·정화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원·하청 구분 없이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 안전한 상태가 확인된 후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투자는 생산성과 기업의 가치 향상으로 돌아옵니다.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으로 안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 발생 시 따르는 손해가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경영의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은 다수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복잡한 특수성이 있겠으나, 노-사 및 원청-하청 간의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안전 현안을 지혜롭게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역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안전 앞에서 어떠한 타협도 없다”라는 확고한 일념으로 국민들께서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터로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매년 심화되는 폭염 속에서도 일터의 안전을 지켜낼 현장의 실천 방안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모국어 번역본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체감온도 계산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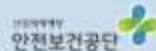
- 물**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냉방장치**
 - ✓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119 신고**
 -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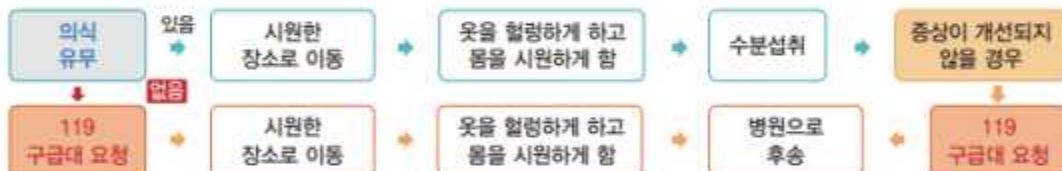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

▶ 온열질환 증상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서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 밀폐공간은 '질식사 사망 위험공간'입니다. 폭염 시 매우 위험합니다.

- ❖ 밀폐공간(탱크·저장용기의 내부, 맨홀 등)은 기온 상승 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하여 '한 번의 호흡으로도 사망할 수 있는 위험 장소'입니다.

반드시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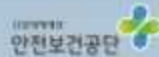
- ❶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❷ 작업전·작업중 지속적인 환기
- ❸ 적정공기가 아닌 경우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 ❶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 ❷ 측정결과 기록·보존
- ❸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 ❹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교육 강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질병관리청